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동아리연합회 회칙 세칙 제2호] [일부개정 2025.06.04.]

제정 추정불가 <제정> 개정 1998.10.04.<일부개정> 개정 2006.03.22.<일부개정> 개정 2014.05.28.<일부개정> 개정 2015.06.02.<전부개정>
 개정 2015.12.01.<일부개정> 개정 2017.11.22.<일부개정> 개정 2019.10.30.<일부개정> 개정 2021.06.25.<일부개정> 개정 2022.09.21.<일부개정>
 개정 2023.03.22.<일부개정> 개정 2025.06.04.<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제 3 장	기관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3
제 2 절	선거운동본부	4
제 4 장	선거	
제 1 절	선거 일정 및 선거 공고	7
제 2 절	후보자 추천 및 등록	3
제 3 절	선거운동	5
제 4 절	이의제기	5
제 5 절	징계	5
제 6 절	투표	5
제 7 절	투표 성립	5
제 8 절	개표	5
제 9 절	당선	5
제 10 절	재투표, 재선거 및 보궐선거	3
제 5 장	선거시행규칙	2
제 6 장	세칙 개정	2
부 칙	5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2장「선거」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원칙)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는 선거인단을 꾸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의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선거는 전임 동아리연합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평가·계승하여 본회 모든 회원들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 ③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조(적용 범위)

- ① 본 세칙은 본회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 또는 선거관 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 4 조(대표자 및 기구의 책임)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본회의 운영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 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단, 운영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등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성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5 조(선거권과 선거인단)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71조에 의거, 선거인단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인단은 각 중앙동아리 당 5인으로 하며, 각 중앙동아리 회장과 중앙동아리의 정회원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중앙동아리의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이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준회원일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정회원 5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③ 선거인단 제출 공고는 후보 추천 개시 일에 하며 기간은 1주일로 한다.
- ④ 제출된 선거인단 명부는 선관위에서 검토한다.
- 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선거인단 자격은 등록서류에 등재된 정회원에 한정한다.
 2. 중앙동아리 회원 중 2개 이상의 중앙동아리 활동을 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선거인단에 포함되었을 경우 그 중 1개의 선거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선거인단에서는 제외한다.
 3. 위 호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4명이 된 중앙동아리는 다른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한다. 단, 투표일 2일 전까지 선거인단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앙동아리의 선거인단을 4인으로 확정한다.
- ⑥ 검토가 완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공고를 투표일 24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공고 이후 선거인단 변경은 불가능하다.

제 6 조(피선거권)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본 세칙을 위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동아리연합회장 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는 2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중앙동아리 활동을 동아리연합회장 정후보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정후보는 1 학기 이상 지속해온 자. 단, 반드시 회원 명부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분과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과 본 세칙을 위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소속 중앙동아리에서 1년 혹은 2학기 이상 활동하고 2개 학기 이상 활동명부에 등재된 자.
 3.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정회원인 자.
- ③ 11월 분과위원장 선거가 무산되어 3월에 분과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본 회의 집행위 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입후보 할 수 있다.
 1. 본 회에서 3개월 이상 집행위원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현재 재학 중인 자.

제 3 장 기관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7 조(목적 및 위상)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대중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2장「선거」 및 본 세칙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결정·조정·통제할 권한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기구이다.

제 8 조(업무 및 권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의 공정성·민주성·대중성을 구현할 제반사업의 기획 및 집행
 2.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 전개
 3.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홍보
 4.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취재·보도에 대한 학내·외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5.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선거시행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6. 「한국의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7. 공동선거자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8.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9.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 9 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이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 7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그 산하에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선거관리위원)

- ①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재학 중인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이 선거관리위원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② 제10조 1항에 따라 운영위원이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중앙동아리 정회원 당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각 중앙동아리 대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선거관리위원장단)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둔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위원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리연합회장단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제11조 1항에 의거 부위원장을 두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 대리를 선임한다.

제 12 조(선거관리위원의 의무)

- ①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3 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 및 해임)

- ①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임되지 아니 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3. 특정 사안에 의하여 운영위원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본회의 정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경우 해임 요구와 관련된 이유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임 요구서를 선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혹은 분과위원장 후보로 한정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 ⑥ 제5항에 의하여 해임된 선거관리위원은 해임 이후에도 본회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제 14 조(선거관리위원의 사임 및 추가임명)

- ①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임 요구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후보 및 분과위원장 후보 또는 각 선거의 선거운동본부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임 요구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경우 또는 해임된 경우 제10조(선거관리위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소집)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혹은 분과위원장 후보의 이의제기에 의한 소집요구
-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 16 조(개회의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17 조(표결방법)

-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요 사안을 다루는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 18 조(출석요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1. 후보자
-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제 19 조(집행위원회)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집행위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집행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선거관리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며 동아리연합회 회칙 . 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집행위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위는 해당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1.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
 - 2.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 세칙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 안내 및 홍보
 - 3. 부정선거행위와 동아리연합회 회칙·선거시행세칙·규칙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 자료 수집 및 적발
 - 4. 기타 공정선거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

제 2 절 선거운동본부

제 1 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제 20 조(목적)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의 운동을 통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 21 조(구성)

- ①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 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후보자
 - 2. 선거운동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원

-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최종등록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을 제출하여 승 인받은 시점부터 구성 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22 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3조(후보자 등록)에 의하여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 후부터는 본부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본부원의 변동 사항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일 2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⑤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 자를 대신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을 두지 않을 수 있 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동아리연합회장단 후보자가 임명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1인 이 그 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동아리연합회장단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 는 신임 선거운동본부 장의 이름, 소속 중앙동아리,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단, 심사 결 과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⑥ 제5항에 의하여 승인된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는 익일부터 유효하다.

제 24 조(목적)

- 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5 조(의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본 세칙 및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 선 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를 발전적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6 조(선거운동본부실)

-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선거운동본부실을 둘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중앙동아리 자치공간
 - 2. 총학생회,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독립기구의 사무실
 - 3.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 4. 동아리연합회실
 - 5. 기타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 ③ 본회의 집행기구, 운영기구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 2 관 분과위원장 선거

제 27 조(선거운동본부)

분과위원장 선거에 분과위원장 후보자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본부를 둘 수도 있다.

제 28 조(선거운동본부의 운영)

제27조(선거운동본부)에 따라 선거운동본부가 꾸려진 경우, 이에 관한 제반 조치는 제1관 「동아 리연합회장단 선거」를 준용한다. 단, 선거운동본부가 꾸려진 경우 선거운동본부원은 두 개 이상 의 분과위원장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

제 4 장 선거

제 1 절 선거 일정 및 선거 공고

제 29 조(선거 일정)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이상 9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5일 이상 12일 이내, 투표일을 1일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 ④ 그 밖에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0 조(선거 공고)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후보 등록 마감 시간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명단

제 2 절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제 31 조(후보자 추천)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 후보자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추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 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제 32 조(후보자 추천 기간)

- ① 후보자 추천 기간은 3일 이상 9일 이내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추천 기간 시작일 6시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 일 전날 20시까지로 한다.

제 33 조(후보자 등록)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서류·파일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
 2. 출마소견문
 3. 입후보자의 재학 증명서
 4. 입후보자의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5. 핵심 선거 공약·으뜸구호(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본부명도 함께 기재한다.)
-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하며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 34 조(등록 기준)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3개 분과 소속 중앙동아리에서 총선거인단 재적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추천인은 선거인단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 ② 분과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추천 인은 선거인단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1. 분과 내 재적 중앙동아리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추천
 2. 해당 분과 소속 선거인단 재적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추천

제 35 조(예비후보자)

①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선거 공고 이후 후보자 추천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각 1부
2. 동아리연합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이력서 각 1부
3. 예비후보자 등록예치금 금 100,000원

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

③ 제 1항 제 3호의 등록예치금은 무분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후보자 최종등록 이후 해당 후보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단, 해당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최종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해당 등록예치금은 공동선거자금에 귀속된다.

제 36 조(입후보자 최종등록)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동아리연합회장 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허가한다.

② 제1항의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최종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9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에 의하여 그 즉시 이를 공고한다.

제 37 조(규칙 확정 회의)

① 제37조(입후보자 최종등록)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입후보자가 최종 등록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칙, 본 세칙 및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26조(선거운동본부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실 위치
3. 기타 선거 제반 사항

③ 규칙 확정 회의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제1항에 의한 소집
2. 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
3.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소집 요구

④ 규칙 확정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3인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⑤ 규칙 확정 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⑦ 규칙확정회의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와 분과위원장 선거를 구분해서 실시한다.

제 38 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2. 분과위원장

3. 본회의 집행위원
 4.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 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5. 각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6.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 독립학부, 각 학부·과 학생회의 독립기구 및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 39 조(후보자 사퇴)

-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후 3일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 ② 사퇴한 후보자는 타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 ③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경우 회장단 후보자 2인 모두가, 분과위원장 선거의 경우 분과위원장 후보자가 제3항의 사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⑤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도중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운동기간의 2분의 1 이상 꺾이될 경우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0 조 (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최종등록 다음 날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 고를 하여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후보자 또는 분과위원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중앙동아리, 소속 단과대 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단, 해당 분과 내 소속 중앙동아리가 2개 이상일 경우 한 중앙 동아리만 기재하도록 한다.)
 2. 추천인수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또는 분과위원장 후보의 등록 학기
 4. 선거운동본부명과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 공약, 으뜸구호
 6. 포스터용 사진
- ② 핵심 선거 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균등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다.

제 3 절 선거운동

제 41 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행위이다.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 등 민주적 인 선거풍토를 해치는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다.
 1. 선거에 관련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본회 집행기구, 특별기구, 독립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및 학내 단 체의 통상적인 활동

3. 본회 회원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 또는 주의 1회를 준다.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각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⑤ 선거운동은 반드시 학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⑥ 선거운동본부원은 학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부착하고 다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42 조(선거운동 기간)

- ①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 12일 이내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 ③ 제2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 43 조(사전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간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그 외에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1조(후보자 추천)의 후보자 추천행위
 3. 설문조사(조사 당시에 출마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 설문조사만 가능)
 4. 후보자 지지 및 추대 모임
 5.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 ③ 제2항 제4호의 후보자 지지 및 추대모임은 후보자 추천 기간 중에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예비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실내에서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④ 제3항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 및 A5용지 규격 이하의 초청장으로 한정 하며 이 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⑤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 44 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3.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4. 분과위원장
5. 본회의 집행위원
6.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 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7. 각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8.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 독립학부, 각 학부·과 학생회의 독립기구 및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속 기구에 사임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임하였음을 제37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 45 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합동유세
2. 합동공청회 참가
3. 선전물(현수막·조형물·유인물·정책자료집 등)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기타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 46 조(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 의실 유세, 중앙동아리 자치 공간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 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 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강의 시작시간, 점심시간, 강의실 이동시간의 강의실, 강의동, 정문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 을 통하여 독점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⑦ 개인유세에서 TV, 빔 프로젝터, PC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는 해당 선거운동본

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47 조(합동유세)

- ① 합동유세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또는 분과위원장 선거가 경선일 경우 시행한다.
- ② 합동유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혹은 각 분과위원장 선거 당 2회 이하로 시행한다.
- ③ 합동유세 시간은 제36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2시간 이내로 정하며 선거운동본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
- ④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유세 시작 1시간 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추천하여 정한다.
- ⑤ 합동유세의 유세 장소는 제36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정하며 지나친 소음, 통행 방해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유세에서의 유세자격을 박탈한다.
- ⑦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엠프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⑧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 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⑨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거운동본부의 선거홍보물을 게시·배포·방송·연출할 수 없다.
- ⑩ 각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유세시간에 한하여 선거홍보물을 게시·배포·방송·연출할 수 있다.
- ⑪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⑫ 합동유세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 48 조(합동공청회)

- ① 합동공청회는 해당 선거가 경선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단, 단독 선거 일 경우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합동공청회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공청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는 합동공청회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합동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가 합동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공청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공청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 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⑤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 자유질의로 구성되며 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 질의 및 응답시간은 제36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⑥ 합동공청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 ⑦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⑧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49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 한다.
- ②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은 본 세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수시로 제작·제출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에 대한 사전 허가 요청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개최된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회의 결과 해당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이 제49조(게시물), 제50조(유인물), 제51조(정책자료집)의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게시·배포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 ⑦ 모든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게시 및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⑧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으로 한다.

제 50조 (게시물)

-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하는 장소에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으며 모든 포스터는 선거관리위원 감독 하에 부착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포스터는 A2 이하, 3도 이하, 1면 이하, 2종 이하로 한정하며 2종 도합 1,000부를 초과하여 부착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모든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 감독 하에 게시되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현수막은 가로 7m 이하, 세로 1m 이하, 3도 이하, 1면 이하, 2종 이하로 한정하며 2종 도합 6개를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
- 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조형물은 선거관리위원 감독 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⑥ 제5항의 조형물은 가로 1m 이하, 세로 1m 이하, 높이 2m 이하, 1종 이하로 한정하며 도합 2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51 조(유인물)

- ①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인물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유인물은 회당 2,000부 이내로 한다.
- ③ 유인물의 구성은 신문과 리플렛으로 하며 도합 3종 이하로 한정하고 3종 도합 5,000부 이하로 한정한다.

- ④ 제3항의 신문은 A4 이하, 4면 이하, 1도 이하, 대판 이하, 1종 이하로 한정한다.
- ⑤ 제3항의 리플렛은 A5 이하, 1장 이하, 3도 이하, 2종 이하로 한정한다. 단, 리플렛을 접지하 면 펼쳤을 때 A4 크기 이하로 한다.
- ⑥ 모든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52 조(정책자료집)

- ①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책자료집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책자료집은 회당 1,000부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정책자료집은 B5 이하, 20쪽 이하, 1종 이하로 한정하며 도합 2,000부 이상 배포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정책자료집의 표지는 도수 제한이 없으며 내지는 1도 이하로 한정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며 각 선거 운동본부는 정해진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고 마감 시각을 지 키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⑥ 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등에 관한 사안은 제48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를 준용한다.

제 53 조(온라인 선거운동)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SNS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개통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온라인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온라인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계정의 수 를 제한하고 해당 계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계정을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계정을 공고한 다.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계정 이외의 다른 계정을 사 용하여 온라인 의사표현 행위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⑦ 그 밖에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4 조(선거운동본부복)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상징물·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 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 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⑤ 선거운동본부복을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착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 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⑥ 선거운동본부복은 반드시 학내에서만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4 절 이의제기

제 55 조(이의제기 방식)

- ① 선거에 관련된 이의제기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③ 투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표와 관련하여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서식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56 조(이의제기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 ② 이의제기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징계

제 57 조(징계)

징계라 함은 본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58 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시정명령·주의·경고로 나뉜다.
- ② 시정명령이 5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시정명령 5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5회는 소멸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시정명령 2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된다.
-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된다.
-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 59 조(시정명령)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징계결정문과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2조(선거운동본부원) 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 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경우
2. 제24조(선거운동본부장) 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경우
3. 제40조(선거운동) 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4. 제40조(선거운동) 제4항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부착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제48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4항의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아니할 경우

② 시정명령을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공간, 해당 선거운동 본부 온라인 선거운동공간에 게시한다.

제 60 조(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징계결정문과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시정명령을 5회 받았을 경우(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5회는 소멸한다)
3.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 2회를 받았을 경우(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 한다)
4. 제22조(선거운동본부원) 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본부원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5. 제26조(선거운동본부실)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였을 경우
6. 제35조(입후보자 최종등록)의 입후보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경우
7. 제40조(선거운동) 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8. 제40조(선거운동) 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학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부착 하고 다녔을 경우
9. 제42조(사전선거운동) 제3항의 후보자 지지 및 추대모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0. 제45조(개인유세) 제6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1. 제45조(개인유세) 제7항의 개인유세에서 TV, 빔 프로젝터, PC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12. 제46조(합동유세) 제10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3. 제47조(합동공청회) 제4항의 후보자가 합동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4. 제48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5항의 선거관련 게시물·유인물·정책 자료집에 타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15. 제48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7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 외에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게시 또는 배포하였을 경우
16. 제49조(게시물) 제8항의 게시물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7. 제49조(유인물) 제6항의 유인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 외의 장소에 배포하였을 경우
18. 제50조(정책자료집) 제5항의 정책자료집 원고마감시각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19. 제52조(온라인 선거운동) 제6항의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0. 제53조(선거운동본부) 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였을 경우
21. 제53조(선거운동본부) 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본부를 착용하였을 경우
22. 제53조(선거운동본부) 제6항의 선거운동본부를 학외에서 착용하였을 경우
23. 제54조(이의제기 방식) 제6항의 이의제기 방식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4. 제65조(투표일 및 투표시간) 제2항의 투표시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5. 제92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제2항의 개표장 출석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6.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경우

② 주의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공간,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공간에 게시한다.

제 61 조(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징계결정문과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되었을 경우(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40조(선거운동) 제5항의 학외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을 경우
5. 제42조(사전선거운동) 제4항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기 위하여 규정 규격 외의 선전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6. 제42조(사전선거운동) 제5항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제4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8. 제48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6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게시·배포하였을 경우
9.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을 경우
10. 선거에 관련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협박하거나 선거진행 또는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을 경우
11. 선거에 관련된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을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였을 경우
13.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경우
14.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경우
15.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에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6.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경우

할 경우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사과 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공간,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공간에 게시한다.

제 62 조(징계의 의결 및 취소)

- ①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③ 제2항의 재심의 요구는 동일한 징계에 관하여 3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주의 또는 경고의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절 투표

제 63 조(투표 방법)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4 조(투표관리)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선거에서 실시되는 모든 투표함을 한 곳에 배치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에 투표관리요원을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투표관리요원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1인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⑤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와 각 분과위원장 선거의 투표함은 투표함에 부착되는 안내 용지의 색 을 모두 다르게 한다.
- ⑥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와 각 분과위원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각기 서로 다른 색으로 하고 제4 항에 따라 투표함에 부착된 구분 용지의 색깔과 동일해야 한다.

제 65 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장 「선거권과 선거인단」에 따라 각 중앙동아리 대표자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를 관리한다.

제 66 조(투표일 및 투표시간)

- ① 투표는 1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투표시간 및 투표일을 연장해야 할 필요 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종료 1시간 이내에 그 여부를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고 공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와 각 분과위원장 선거는 투표 연장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 ④ 투표시작과 마감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 67 조(투표소)

- ①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②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標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투표소에는 당해에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함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 ⑤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 30분 전에 투표소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모든 투표소에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68 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동아리연합회장단 후보자 및 분과위원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중앙동아리, 학 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33조(후보자 등록)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 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 ④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9 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신분 확인
- 2. 선거인의 날인 또는 서명
- 3. 통합선거인명부 확인 및 명기
- 4. 투표용지 확인
- 5. 투표용지 배부
- 6. 기표 및 투표

제 70 조(신분 확인)

- ①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전자선거인명부제를 운영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는 학번의 입력 등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1 조(투표용지 교부)

-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을 수 있다.
-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2 조(기표 및 투표)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개의 선거운동본부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 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 73 조(투표참관인)

-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소에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 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참관시간기록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 ⑥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 74 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하여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의 판단 하에 이를 처리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단, 투표관리요원은 무분별한 촬영을 제재할 수 있으나 징계를 줄 수는 없다.
-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 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5 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제53조(선거운동본부복) 제2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선거인명부 열람 행위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당일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 76 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 ①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 선거관리위원임을 증명하는 비표 또는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 77 조(선거운동본부의 투표 권유 행위)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 78 조(투표의 비밀보장)

-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 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 79 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 ① 투표 시작일에는 투표 개시 30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각 투표소로 이송하고 선거 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입회하여 투표함의 결함 유무를 확인 및 봉쇄한다.
- ② 투표 2일차부터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해진 투표함은 투표 개시 30분 전에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과 선거운동본부원이 함께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투표용지·선거인명부·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 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 80 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장 및 각 선거운동본부장은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② 투표관리요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 ③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해진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과 선거운동본 부원이 함께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남은 투표용지·선거인명부·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 81 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남은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 82 조(투표함 보관)

- ①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 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중 1인 이상과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1인 이상이 함께 해당 장소에 상주하도록 한다.

제 7 절 투표 성립

제 83 조(투표 성립 요건)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거는 50% 이상의 투표율로 성립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 단 선거는 단독 선거일 경우 40% 이상의 투표율로 성립하고, 분과위원장 선거는 단독 선거일 경우에는 50% 이상의 투표율,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회의 집행위원이 출마한 분과위원장 선거는 66.67% 이상의 투표율로 성립한다.
- ② 투표 성립 여부는 선거인명부에 서명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투표 성립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선포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성립 선포 이후 개표과정에서 총 투표율이 제1항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2항의 투표 성립 선포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여도 해당 투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 8 절 개표

제 84 조(투표 성립 요건)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제 85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1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 86 조(개표장)

개표장은 학내 공개된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87 조(개표소)

- ① 개표소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 88 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모든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함

께 개표소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9 조(개표절차)

- ① 개표는 투표소 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총 투표인 수의 공고
 2.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하여 보관
 5.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 별로 반복
 7. 최종 결과 발표

제 90 조(투표용지의 유·무효처리)

- ① 후보자 1인에게만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을 유효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2.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5. 경계선에 기표한 것
 6. 표기란 밖에 기표한 것
 7. 투표용지에 정해진 기표용구 표식 이외의 문자 또는 이름을 기입한 것
 8. 투표 당시 공개된 것
 9. 하나의 기표란에 3회를 초과하여 기표된 것
 10. 그 외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 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3.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 91 조(투표함의 무효처리)

투표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투표함을 무효처리 하고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 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1. 투표 도중 투표함이 개봉될 경우
2. 투표 개시 또는 개표 시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하여진 투표함의 자물쇠·서명 등의 훼손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 92 조(오차)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경우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 지 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이상 5%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총오차가 5%를 초과할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되며 제98조(재선거)에 의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 ② 분과위원장 선거의 경우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 총 합의 차이(이하 “총 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이상 10%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 다. 총오차가 10%를 초과할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되며 제98조(재선거)에 의하여 재선거를 시행한 다.

제 93 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각 선거운동본부의 동아리연합회장단 후보자, 분과위원장 후보자 및 각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 94 조(개표참관인)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 95 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선거운동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 9절 당선

제 96 조(당선의 기준)

- ① 개표 결과 유효표의 최다 득표선거운동본부 또는 단선일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선거운동 본부를 당선인단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선인단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제97조(재투표·결선투표)와 제 99조(재선거)에 의하여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서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이상일 경우(재투표)
 2. 분과위원장 선거에서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이상일 경우
 3. 최다 득표 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일 경우(결선투표)
 4. 1위 득표 선거운동본부와의 득표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은 선거운동본부가 있을 경우(결선 투표)

5.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재투표)
6.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많고 총 반대표가 총 찬성표보다 높을 경우(재선거)

제 97 조(당선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의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최종 당선확정을 공고하며 해당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분과위원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동아리, 학번
 2. 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분과위원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 10 절 재투표,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 98 조(재투표·결선투표)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선거운동본부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② 분과위원장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선거운동본부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③ 최다 득표 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최다 득표를 기록한 모든 선거운동본부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1위 득표 선거운동본부와의 득표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은 선거운동본부가 있을 경우 1위 득표 선거운동본부와 해당 선거운동본부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④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⑤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재투표·결선투표가 결정되면 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이들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 및 무효표에 관계없이 득표수가 많은 선거운동본부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⑥ 각 선거에서 재투표·결선투표에서도 최다 득표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따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은 24시간 이내에 비상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의 다수표를 얻은 선거운동 본부를 당선인단으로 한다.

제 99 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결정하며 이때 해당 후보는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1.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많고 총 반대표가 총 찬성표보다 높을 경

우

2.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경우 재투표·결선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경

우

3. 분과위원장 선거의 경우 재투표·결선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경우

4.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총오차가 5% 이상으로 선거가 무효 되었을 경우

5. 분과위원장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총오차가 10% 이상으로 선거가 무효 되었을 경우

6. 입후보자·당선인의 부존재 또는 징계·궐위 등의 사유로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선거가 결정될 경우 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재선거의 일정 은 운영위원회의 재량 하에 시기를 정하되 익년 3월 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선거 시행 일정에 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00 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위원장의 탄핵, 사고 사퇴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30일이 넘을 경우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가 결정될 경우 그 즉시 운영위원회는 이를 공고한다.

③ 보궐선거 시행 일정은 궐위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즉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101 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102 조(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발의한다.

1.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3. 제36조(규칙 확정 회의)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제 103 조(세칙 개정)

본 선거시행 세칙은 동아리연합회 회칙개정 방법에 준하여 개정한다.

제 104 조(발효와 적용시기)

본 선거시행세칙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한다.(단, 선거 일정이 진행 중일 때 공포가 되었을 시 차 기 년도 선거부터 적

용하도록 한다.)

부칙

본 회칙은 공포 후 2025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